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300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정경섭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활용을 확대하고,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기준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 다. 의원 임기만료 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라. 징계처분 또는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출장 제한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 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 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사.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권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외의 우수 정책과 제도를 조사·연구하여 지역의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출장 목적과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관광·시찰 위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낭비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전국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증빙 자료 위·변조,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결과보고서 심사 등 사전·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음.
- 또한 2025년 11월에는 지방의회 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일반적인 선진사례 견학 등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표준안을 추가로 개정·권고하였으므로, 이를 하남시의회 규칙에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출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심사·공개,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및 동행 직원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본 개정규칙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입법 적정성

- 안 제3조에서 국가기관 등의 공식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하던 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은 출장 경위나 초청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에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심사과정에 주민의 관점과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제2항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외국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의 출장에 대해서는 필요성·긴급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한 것은 임기 말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 취지에 부합함.
- 안 제11조제3항에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가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성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공개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공개기간과 의견제출 방법, 접수된 의견의 처리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제4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책임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장 제한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과실 여부, 예산상 손실 규모 및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5항에서 출장 결과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이나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4조제2항에서 출장보고서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성

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공개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은 지방행정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임.

- 안 제16조에서 동행 직원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나 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출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비용부담, 사적 심부름 또는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출장과 사적 행위를 구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함.

다. 법적 타당성

-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허가, 결과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해당하므로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출장계획과 결과보고서의 사전·사후 공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행 직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와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한 것은 의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관리 책임에 부합하고, 직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결론

-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외부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임기만료 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와 출장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허가·보고·공개 및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동행 직원의 권익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및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